

## IV. 발치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양상과 그 예방대책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진단학·구강내과학교실

부교수 신 금 백

### I. 서 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변천에 따라 치과계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환자의 권리의식증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치과외사의 증가, 치과외사의 법치외학적 지식 부족 및 제도적 의료분쟁조정활동의 미흡 등의 제반 요인에 의해 치과진료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치과진료관련의료분쟁 가운데 발치와 관련된 주의의무태만성 의료분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발치”가 치과임상에 있어 필수적 진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수적 치과진료행위로서의 발치를 시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생물학적 차원이나 임상치의학적 차원 이상으로 법적 차원에서도 그 당위성을 확보해야만 불의의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고찰, 그 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 II. 의료분쟁

#### 1. 진료행위의 법적 성격

발치를 포함한 진료행위에 대한 국내 법조계에서 그 성격 규정은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준위임계약”). 따라서 사무의 처리 즉 진료를 위탁받고 이를 승낙한 술자는 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인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즉 진료행위의 결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할 의무(결과예견의무)와 그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의무(위험회피의무)를 지니게 된다.

#### 2. 진료과오

진료과오란 “질병이나 손상을 치료함에 있어 무지, 부주의, 적절한 전문적 기술의 부족, 공인된 관례나 원칙의 무시, 태만, 약의 및 고의로 말미암아 환자를 조악하게, 부당하게 또는 무분별하게 다룬 결과 오히려 환자에게 손상을 입히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말한다”(Black's Law Dictionary). 일반적으로 진료과오가 인정되려면 술자의 주의의무태만, 환자의 손상, 그리고 이들 상호간의 인과관계성립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경우 피해자구조 차원에서 진료과오를 인정함에 있어 “개연성 사실인정”의 이론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3. 진료과오와 법적책임

국내의료관계소송판례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진료과오의 핵심개념을 기본적으로 술자의 주의무태만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진료행위제공을 승낙한 술자가 결과예견의무와 위험회피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진료과오로 인정되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책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형사상 업무상 과실, 중과실죄의 형벌을, 그리고 행정상 경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 (1) 민사상 책임

##### ①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책임

“과실또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이 경우 거증책임이 원고측(환자측)에 있다.

##### ② 채무불이행에 의한 배상책임

“채무자가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민법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이 경우 거증책임은 피고측(술자측)에 있다.

##### ③ 손해배상의 기준

행위자(가해자, 채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 즉 유형의 재산적 손해와 무형의 비재산적 손해를 합산하여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형사상 책임

형법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조항에 따른 책임을 말하며, 이 경우 “법률상 고의”개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률상 고의”란 자기자신은 정당한 행위라고 믿고 행동하였으나 객관적으로 그것이 위법의 행위라고 평가되는 일체의 행동을 뜻하며, 반드시 작위적인 의도하에 행하여지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측에 나타난 대상까지를 포함한다.

### (3) 행정상 책임

“의료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일정기간(1-3개월 또는 6개월)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의료법의 “업무정지”조항과 “보사부장관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의 “면허취소”조항에 따른 벌칙을 말한다.

### 4. 의료분쟁의 양상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은 진료과오로 입증될 경우 또는 불가항력일 경우 또는 원인불명일 경우 등 여러 가지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업무상 과실, 법률상 고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진료과오로 인정되어 해당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며, 특히 체질환자에서와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합병증발생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면책될 개연성이 높으며, 한편 원인불명일 경우에는 진료의 성실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보존여부가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된다.

### 5. 의료분쟁의 수습책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의 수습은 환자측과의 합의나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의 경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나 학계의 자문을 요청함과 아울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대한 피소대비차원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 III. 발치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양상과 그 예방대책

#### 1. 발치와 관련된 국내의 의료분쟁사례

- 환자를 잘못구분하여 발치한 경우
- 치아를 잘못구분하여 발치한 경우
- 동의(승낙)없이 발치한 경우
- 고혈압환자에 대한 발치목적 마취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 발치목적 마취시 마취약제를 잘못 선택한 경우
- 발치목적 마취시 과도한 마취로 환자가 사망한 경

우

- 발치목적의 마취시 감염된 부위에 침윤마취를 시행한 경우
- 발치목적 마취시 주사침이 파절된 경우
- 발치목적 마취시 환자의 갑작스런 행동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 발치관련기구의 소독미비로 인해 전신감염이 야기된 경우
- 발치관련기구에 의해 환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 발치도중 구개손상이 야기된 경우
- 발치도중 인접치에 손상을 가한 경우
- 발치도중 인접치의 충전물이나 보철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
- 발치도중 골절이 발생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발치도중 하악과두가 탈구된 경우
- 발거치를 삼킨 경우(식도, 기도)
- 발치시술 관련 위생재료를 삼킨 경우(식도, 기도)
- 발치도중 치과보철물을 삼킨 경우(식도, 기도)
- 난발치로 인해 전의(轉醫)되어 악골골절이 야기된 경우
- 발치후 파절된 치근잔존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 발치후 표제성골막염(dry socket)이 야기된 경우

## 2. 발치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양상

발치와 관련된 의료분쟁은 대체로 발치시술전, 발치시술도중, 발치시술후의 진료행위와 관련된 진료과오여부, 또한 발거된 치아, 충전물, 보철물의 소유권 문제, 또한 발치에 따른 상해진단서작성상 치료기간 산정문제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한다.

## 3. 발치와 관련된 의료분쟁의 예방대책

### (1) 발치시술관련 일반적 예방대책

치과임상에서 발치를 시술하고자 계획할 경우, 우선 그 치료계획단계에서부터 전신적으로는 전신병력조사(표 1 참조)와 전신상태진찰(표 2 참조)과정을 철저히 시행하여 환자의 입장에서 발치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예견의무)를, 그리고 국소적으로 해당치아를 발거함으로써 예견되는 악구강계의 치명적 변화여부에 대한 평가(결과예견의무)

를 수행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의무기록지에 보존해 두지 않으면 유사시 진료과오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전신적, 국소적 평가 결과 발치계획이 확정되면 반드시 환자에게 예후까지를 설명해주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또한 발치전처치 행위에 있어서도 철저한 기구소독과 함께 생물학적 및 임상치의학적 도대위에서 최적의 마취방법, 마취약제 및 발치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발치술시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손상을 야기해서는 안되며, 시술도중이나 시술 후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최적의 대처를 하여야 하며(위험회피의무), 발치후의 약물투여에 있어서도 그 당위성 여부에 따라 최적의 약제와 투여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귀가 후의 약물복용법과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이상에 관한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분쟁화되었을 때 진료과오에 대한 반증자료제시에 있어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치과환자의 병력 조사항목

1. 당신은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2. 당신은 지난 2년간에 의사의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3. 당신은 최근 1년간에 복용중인 약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4. 당신은 페니실린이나 다른 약에 알레르기(또는 부작용)가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5. 당신은 수술후나 상처를 입고 지혈이 잘 안되어 고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
6. 다음에 열거한 병증에서 앓으신 적이 있거나 앓고 계시면 ○표를 하시오. 고혈압   백일해   관절염   당뇨병 결핵   간질   간염   빈혈 정신질환   류마티얼   뇌졸중(뇌일혈) 황달   천식   축농증
7. 현재 임신중이신지요?(여성) 예,            아니오
8. 당신은 요즘음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지요? 예,            아니오

표 2. 치과환자의 전신건강상태 평가항목

- |                      |
|----------------------|
| 1. 생장후               |
| 2. 세균성 질환            |
| 3. 바이러스성 질환          |
| 4. 선천성 심장질환          |
| 5. 류마티성 심장질환         |
| 6. 관상동맥 아테롬 경화성 심장질환 |
| 7. 고혈압               |
| 8. 심부전               |
| 9. 만성폐질환             |
| 10. 간질환              |
| 11. 신질환              |
| 12. 임신               |
| 13. 내분비질환            |
| 14. Allergy          |
| 15. 기관지 천식           |
| 16. 출혈성 질환           |
| 17. 혈액질환             |

(2) 소아환자와 노인환자 발치시 예방대책

소아환자의 경우 발치시술전 유치치근상태와 계승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치시술도중 계승치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노인 환자의 경우 심맥관계질환(예 : 심근경색증, 심부전)과 같은 전신 질환상태와 치근단비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치시술은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응급사태발생에 만반의 대처를 해두어야 한다.

(3) 발거된 치아, 충전물, 보철물의 소유권분쟁 예방대책

병적이유에 의해 발거, 탈락, 제거된 치아, 충전

물, 보철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환자측의 포기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환자측에 있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발치에 따른 상해진단서 작성상 치료기간산정 문제

상해로 인한 치아손상 특히 발치를 요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진단서작성에 임하는 치과의사는 그 치료기간산정에 있어 환자측의 제반 전신적, 국소적요인을 종합판단하여 자신의 임상경험을 충분히 활용, 산정하되 보편적인 타당성을 견지하여 산정함으로써 상해사건 자체보다도 오히려 진단서기재내용이 분쟁의 실마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1. 필수적 치과진료행위로서의 발치를 시행함에 있어 통상적인 생물학적 차원이나 임상치의학적 차원 이상으로 법적 차원에서도 그 당위성을 확보하여야만 불의의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발치행위와 관련된 진료과오성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발치시술전, 발치시술도중 및 발치시술후의 진료행위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즉, 결과예견의무와 위험회피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